

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등

재외선거와 관련한 현지 여론이나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'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(<http://ok.nec.go.kr>)'의 '참여마당/인적네트워크 커뮤니티'에 올려 주시거나 이메일(paix@korea.kr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귀하의 고견을 재외선거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

※ 재외선거 퀴즈(8월)를 첨부하니, 재외선거 관련 의견과 함께 퀴즈 정답을 위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지난 안내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등

1 「공직선거법」 재외선거 분야 주요 개정내용(2011. 7. 28.)

1.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의 국내선거인명부 등재기준 명확화

개정내용

-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과 다른 구·시·군의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국내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국내선거인명부에는 올리지 아니함.

개정취지

- 현행에 의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내 선거인명부에 각각 등재될 수 있어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국내선거인명부에는 등재하지 않도록 하고,
- 국외부재자의 경우 국내선거인명부에도 등재하는데,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후에 주민등록이나 주소를 옮기더라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당시의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국내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함.

2.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준일 및 중복 등록신청·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

개정내용

- 재외선거인명부는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를 기준으로,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,
- 한 사람이 2이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거나 2이상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가장 나중에 접수된 등록신청 또는 신고에 따라 재외선거인 명부등을 작성하도록 하고,
- 명부작성권자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모두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어느 하나의 명부에만 올림.

개정취지

-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, 같은 사람이 중복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하는 기준을 정함.

3.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방법 확대 및 사본교부 제한

개정내용

- 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들이 재외 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,

- 재외투표관리관도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위원회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하며,
-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함.

개정취지

- 재외선거인등이 구·시·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명부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
-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람의 편의를 제고하고,
-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없음에도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사본교부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함.

4. 재외투표소의 출구조사 금지

개정내용

- 출구조사에 관한 규정인 「공직선거법」 제167조제2항 단서는 재외투표소 설치·운영에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,
- 관련 벌칙규정을 함께 정비함.

개정취지

- 재외투표는 국내의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마감하게 되므로 출구조사 결과가 국내에 알려지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의 부재자투표소와 같이 출구조사를 금지함.

5. 재외투표소 본인확인 신분증 확대 등

개정내용

-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국내 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과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으로 함.

개정취지

- 현행은 재외투표소에서 본인여부 확인에 여권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국내 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과 거류국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라도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재외선거인명부등에 기재된 내용과 대조·확인이 가능한 성명과 생년월일이 모두 포함된 것이면 본인여부 확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.

6. 천재지변 등으로 재외선거 실시불능 시 업무처리 절차 마련

개정내용

- 중앙위원회는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공관 관할 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·운영 중인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.
-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하여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, 이미 실시된 재외투표만을 국내로 회송함.

개정취지

- 천재지변이나 전쟁·폭동 등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공관이 발생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함.

2 일본지역 총영사회의 참석 재외선거 강연
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은 2011. 8. 24.(수) 일본 지역 총영사회의(외교통상부 개최)에 참석하여 '2012년도 재외선거 관리방향'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.
- 김진식 일본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한 10명의 일본지역 총영사와 외교통상부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강연에서 내년 양대 재외선거 중점 관리방향 및 재외선거 주요업무·일정을 설명하였습니다. 또한 재외투표관리관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엄정한 선거중립 및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.



[붙임]

재외선거 퀴즈 (7월) 정답

* 7월 재외선거 퀴즈 정답 ⇨ 1번(㉠, ㉡, ㉢)

㉠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가 늘어났습니다. 여권을 제시해도 무방하고, 사진·성명·생년월일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,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도 가능합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19(재외선거의 투표 절차) 제1항

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(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'12. 3. 3. ~ 3. 7.) 행정안전부가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등(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)이 자신의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10(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) 제4항

㉢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·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현실적으로 불법적 복수국적 보유 여부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재외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적 관련 이의제기를 차단한 것입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13(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) 제4항

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·폭동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·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29(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) 제1항

재외선거 퀴즈 (8월)

● **문제** 다음 중 「공직선거법」(2011. 7. 28. 개정)에 부합하는 진술을 모두 고르시오.

- ㉠ 재외선거인등은 자신의 정보에 한해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.
- ㉡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재외선거인명부뿐만 아니라, 국내선거인명부에도 등재된다.
- ㉢ 천재지변 또는 전쟁·폭동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하여 재외투표기간 중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.
- ㉣ 텔레비전방송국·라디오방송국·일반 및 특수일간신문사가 선거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'출구조사'를 재외투표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.

① ㉠, ㉡, ㉣

② ㉡, ㉣

③ ㉢, ㉣

④ ㉣

거주 국가	재외선거 관련 의견(지역 선거정황 포함)
성명	